

#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과 시책방향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개정령(보건복지부령 제 13102호, 1995. 8. 31)과 1995년 식품위생관리 시책방향은 다음과 같다.

## 1.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중 개정령(보건복지부령 제 13102호, 1995. 8. 31)

### 1. 개정취지

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(대통령령 제 14495호, '94. 12. 31)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, 식품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식품제조·가공업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미리 받도록 하고 있는 품목제조허가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식품위생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#### ◇ 공통사항

-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
-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개정
-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개정
-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
-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

### 가.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신설 (제2조)

- ▷ 식품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으로 운영하고 있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함.

### 나.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키관 변경 (제4조)

- ▷ 알로에제품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키관을 국립보건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변경하여 제품검사업무와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키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.

### 다. 표시기준을 식품공전으로 일원화 (제5조)

- ▷ 현재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식품공전에서 각각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식품공전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함.

**라. 수입식품의 사전신고제 도입**

**(제11조 및 별표 6)**

- ▷ 수입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물품도착일 5일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정밀검사자료로 인정하는 등 수입식품 신고 및 검사제도를 개선함.

**마. 자가품질검사의 강화**

**(제19조 및 별표 8)**

- ▷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제조·가공영업자가 자기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검사항목·검사주기 등의 검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검사장비의 미비 등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영업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.

**바. 영업허가절차의 간소화**

**(제20조 및 별표 9)**

- ▷ 영업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식품제조·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해당식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구비하여야 하는 기계·기구류의 종류를 줄이는 등 영업허가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함.

**사. 단란주점의 시설기준 완화**

**(제20조 및 별표 9)**

- ▷ 종전에는 단란주점에서 객실 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던 것을 객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투명유리를 사용하여 객실 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단란주점의 업종형태에 부합되도록 그 시설기준을 정함.

**아.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범위**

**확대(제21조의 2)**

- ▷ 부패·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유통·보관상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

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업소를 영업장의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로 하던 것을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로 변경하여 그 신고대상범위를 확대함.

**자. 영업허가 등의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(제22조 및 제23조)**

- ▷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현재 영업허가 등의 신청시에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 신원증명서·건축물대장등본·도시계획관계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대상서류에서 제외하고 허가관청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.

**차. 품목제조허가대상식품 축소**

**(제24조 및 별표 10)**

- ▷ 영업자의 신제품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제품생산시마다 미리 받도록 하고 있는 품목제조허가대상식품을 종전의 154개 식품류에서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 영양식품의 2개 식품류로 하고, 나머지 식품은 품목제조신고대상으로 조정함.

**카. 영업자의 지위승계 간소화(제33조)**

- ▷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사실 확인만으로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하도록 함.

**타. 위생교육의 축소 및 완화**

**(제37조의 2)**

- ▷ 영업자·식품위생관리인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을 줄이고,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관리인과 신규 식품접객 영업자에 대하여는 사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.

## 파. 영업자준수사항 축소

(제40조·제42조·별표 12 및  
별표 13)

- ▷ 영업자준수사항 중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축소하여 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.

## 하. 행정처분기준 조정

(제53조 및 별표 15)

- ▷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.

## 거. 기타

- ▷ 과대포장의 범위조정(제6조 제3항)
  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,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(환경부령 제4호, 1995.2.6)
- ▷ 출입·검사 등의 완화(제12조)
  -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처분결과를 보고시 면제받을 수 있음.
- ▷ 수거량·검사의뢰의 권한위임(제13조)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도 수거, 검사의뢰할 수 있음.
- ▷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결과기록서 보관 의무(제14조)
  -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의뢰기관의 시험결과기록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.
- ▷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의 대상변경(제24조의 2)
  - 즉석제조·가공할 수 있는 대상식품 변경(별표 11)
- ▷ 품목제조 중단신고 폐지(제25조)
  - 품목제조 신고를 한 자가 그 품목의 제조를 중단하고자 할 때는 신고관청에 이를 재신고하지 않아도 됨.
- ▷ 품목제조 허가사항의 변경내용 간소화(제26조)



- 기품목제조허가(신고)자가 품목제조 허가변경시 원재료 및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성상을 주원료로 간소화
- ▷ 영업신고서류 간소화(제27조)
  - 영업신고시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도시계획확인원, 원료수급계획서를 삭제, 건축물용도의 내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도시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등본 제출
- ▷ 유사품목 판정기준 삭제(제31조의 2)
- ▷ 위생교육대상자 확대(제36조)
  -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영업소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도 포함
- ▷ 식품위생관리인과 업종의 조정 및 완화(제38조)
  -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도 업종간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시 업종간에 공동으로 1인의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음.
- ▷ [별표 3]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1. 적용대상식품  
건강보조식품·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
- ▷ [별표 5] 및 [별표 13], [별표 15] 및 [별표 16]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- ▷ [별지 제1호서식], [별지 제4호서식(1)]

내지〔별지 제7호서식〕〔별지 제9호서식〕,〔별지 제13호서식〕 및〔별지 제14호 서식〕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- ▷〔별지 제14호의 2서식〕을 별지〔별지 제14호의 3서식〕으로 하고,〔별지 제14호의 2서식〕을〔별지 제14호의 4서식〕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〔별지 제18호서식〕 내지는〔별지 제20호 서식〕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〔별지 제21호서식〕 및〔별지 제22호서식〕을 각각 삭제한다.
- ▷〔별지 제23호 서식〕 및〔별지 제25호서식〕 내지〔별지 제27호서식〕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- ▷〔별지 제28호서식〕중 수수료란의“1,200원” 및“600원”을 각각“5천원”으로 한다.
- ▷〔별지 제31호서식〕 및〔별지 제33호 서식〕 내지〔별지 제35호서식〕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- ▷〔별지 제41호의 1서식〕을〔별지 제41호의 2서식〕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고,〔별지 제41호의 2서식〕을 삭제한다.

#### □ 부 칙

- ▷ 공포일로부터 시행(제1조)
  - 단서조항(1996.1.1)  
제5조(표시기준 등), 별표 9 제1호(식품제조·가공업의 시설기준) 및 별표 13제2호다목(식품소분·판매·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식육판매영업자)는 유예기간을 둠.
- ▷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(제2조)
  - 기 영업허가(신고)자가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유예기간을 둠(1998.1.1)
- ▷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(제3조)
  - 기 영업허가(신고)자 중 제19조(자가품질검사)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자

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유예기간을 둠(1996.9.1)

- ▷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(제4조)
  - 기 영업허가(신고)자는 별표 9(업종별 시설기준)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(1997.1.1)
- ▷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(제5조)
  - 기 영업허가(신고)자 중 그 허가(신고)관청이 변경되었거나 그 업종이 변경된 자는 제22조(영업허가의 신청) 또는 제27조(영업의 신고등)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(신고)증을 재교부받아야 함(1996.7.1).
- ▷ 건강보조식품판매업 등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(제6조)
  - 영 제7조(영업의 종류)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의 영업자, 제21조의 2(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)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(백화점, 슈퍼마켓, 연쇄점 등) 중 별표 9(업종별 시설기준)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(1997.7.1)
- ▷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(제7조)
  -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.

## II. '95. 식품위생관리 시책방향

### 1. 전 망

-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가 크게 높아진 반면,
- 환경공해와 농약의 과다사용 등 식품의 위해요인이 증대되고 있으며,

-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식품의 급증으로 식품위생행정의 제도상 보완 개선이 요구되고, 각종 가공식품의 개발과 유통구조의 다양화 등 식품위생환경의 변화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,
- 식품행정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불량식품의 제조유통사태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,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로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빈번한 문제제기가 예상됨.

## 2. 주요시책방향

### <기본방향>

- 식품위생관리행정의 과학화와 전문화 추진
- 업계의 자율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식품생산 기반조성
- 식품위생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감시활동 전개
-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확대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전국민적 위생감시분위기 조성
-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 및 제도개선 추진

### 가.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방법 개선

- (1) 수거검사실적, 식품정보, 계절적·지역적 특성, 수입식품 부적합현황 등을 집중분석하여 수거대상 다소비식품 품목을



재조정하고,

- (2)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전항목 검사방법을 탈피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해 중점검사 실시

### 나.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 과학화 추진

- (1) 위생관리 우수업체지정 및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(HACCP)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
  - 위생관리 우수업체를 지정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(HACCP)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소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향상 유도
- (2)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계통지도점검 실시
  - 과거 위반사항 및 수거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계통지도 점검실시

### 다. 식품행정의 전산화 추진

식품제조·가공업소에 대한 식품위생관리체계와 업무현황을 전산화하여 식품위생 관리행정의 효율성 제고

### 라. 유통중인 식품관리 강화

- (1) 식품회수(Recall) 제도 도입
  - 식품생산 출하 후 판매과정에서 유통기한 경과, 부패변질 등 위해식품 발생시 회수·폐기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리콜(Recall)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자사제품 관리 및 소비자보호의식 고취
- (2) 영세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
  - 시설 및 식품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영세판매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에 관한 인식제고와 시설개선유도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 실시

### 마. 수입식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
- (1) 식품 등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강화
  - 통관 후 유통기한 변조 등 악덕수입

업자에 대하여는 차후 수입시에도 전수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방안 마련

- (2) 수입식품 모니터링 실시 확대
  - 소비자단체, 자율지도원 등을 통한 수입식품의 모니터링 실시 확대
- (3) 위해요인이 많은 수입식품에 대한 중점관리
  - 냉장·냉동 수입식품, 유통기한이 짧은 수입식품,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수입 식품 등 위해요인이 많은 식품에 대한 집중감시 실시

**바. 불법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**

- (1)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 및 신규 발생억제
  -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종전환 및 신규허가 유도
  - 정비업소 및 허가취소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영업 방지 및 신규 발생 억제
- (2) 심야, 퇴폐, 변태영업 지도·단속 강화
  - 취약지역 및 상습고질업소를 중심으로 지도·단속 실시
  -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업주의 건전영업 자율실천 유도

- (3) 관광특구지역내 식품접객영업질서 확립대책 강구
- (4) 일선기관별 지역책임제 운영 강화

**사. 식품감시기능 보강**

- (1) 식품명예감시원 적극 활용
  - 유통식품 지도단속 등 식품위생단속 업무에 식품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기능 강화 및 감시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
- (2) 자율지도원의 활용 강화
  -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단체(대한식품공업협회 등 9개 단체)에도 자율지도 시행유도
  - 자율지도원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로 자질 향상

**아. 전국민 위생감시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**

- (1)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
- (2)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

**자.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여건개선 추진**

- (1) 위해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
  - 부적정원료 사용, 미생물 기준위반, 첨가물 과다사용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 식품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
- (2) 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고발 기준 등 마련 시행

